



보도시점

2024. 9. 9.(월) 조간

배포

2024. 9. 6.(금) 16:00

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

-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

9.9일(월),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*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「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('24.9.9. ~ 9.19.)하였다.

* 5개 이상의 금융회사(「대부업법」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)에 개인대출잔액 보유자

'23.9.13일(수)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*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**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***하기로 하였다. 이를 '24.7월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'24.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.

- * '24.6월말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 : 16.5조원
- **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: (정상)1% (요주의)10% (고정)20% (회수의문)55% (추정손실)100%
- *** (5~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30% 상향, (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50% 상향

그러나,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,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*되고 있는 상황이다. 특히,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,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**으로까지 내몰릴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
- *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신규취급액조원 : ('21년 21.7 → ('22년 17.5 → ('23년 11.6 → ('24.상반기) 6.8
- ** 불법사금융 피해신고·상담접수 현황(건): ('21년) 9,238 → ('22년) 10,350 → ('23년) 12,884

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 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*을 추진하고자 한다.

*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(안) [개정시~'25.6월] : (5~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<u>10%</u> (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<u>15%</u> ['25.7월~'25.12월] : (5~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<u>20%</u> (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<u>30%</u> ['26.1월 이후] : (5~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<u>30%</u> (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) <u>50%</u>

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개정안은 9.9일(월)부터 9.19일(목)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'24년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.

〈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〉

- 예고기간 : 2024.9.9일(월) ~ 2024.9.19일(목), (10일)
-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 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
 - 전자우편 : jmlee1012@korea.kr 팩스 : 02-2100-2933
 - ※ <u>개정안 전문(全文)</u>은 "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, 정책마당, 법령정보,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90)
<총괄>	중소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이정민 (02-2100-2993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종오 (02-3145-6770)
	중소금융감독국	담당자	팀 장	이희성 (02-3145-6773)





